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22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
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u>변호사</u>,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 ⑦ (생략)	<u>제25조의2(검사의 공소제기 시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검사</u>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 ----- --<u>검사, 변호사</u>----- ----- ----- ----- -----.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아동학대가 가정구성원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적 보호명령제도임.

○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¹⁾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입법례로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²⁾제도가 있음.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비교〉

구 분	현행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 보호 명령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u>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u>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u>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u>판사는</u>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u>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u>

- 참고로, 현행법상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형사적 절차로서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³⁾ 등을 청구하여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피해아동 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구별됨.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이 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청구권자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판사의 직권 외에도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권이 있는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4)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임시조치의 효력을 잃게 됨.

□ 안 제25조의2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5)에 따라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임시조치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임시조치가 중단되면 피해아동

4) 아동보호심판규칙(대법원 규칙 제3039호)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⑤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아동보호심판규칙(대법원 규칙 제3039호)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필수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통지받은 변호사 등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의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7조제1항은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민사적 절차인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권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공소제기 시에 인정할지 일반적으로 부여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최근 본회의(2024. 11. 28.)에서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경우 개정안 제25조의2는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①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아동보호심판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개정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②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여 피해아동 보호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